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875호 2012. 3. 20(화)

◀ 규 칙 ▶

-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61호) 2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62호) 15

◀ 입법예고 ▶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제2012-513호) 28

◀ 고 시 ▶

-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고시 (제2012-20호) 33

◀ 공 고 ▶

- 포항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공고 (제2012-2호) 36

회 람									
--------	--	--	--	--	--	--	--	--	--

규 칙

포항시 규칙 제561호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20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시 본청”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으로 하고, “자동차 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를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를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을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 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며,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제2호 내지 제6호” 를 “제2호 부터 제6호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1인” 을 “1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로교통법” 을 “「도로교통법」” 으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35조에 따라” 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제29조 내지 제32조” 를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다)	배정대상	내구연한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이 2,000cc이상인 차량. 이하 같다)	○ 시 장 ○ 의 장 ○ 부시장	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 시 본청	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중형승용차 (배기량이 1,500cc이상 2,000cc미만인 차량. 이하 같다)	○ 시 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시 본청 ○ 시 의회 ○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소형승용차 (배기량이 1,500cc미만인 차량)	○ 각 기관	
	경형승용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인 차량)	○ 각 기관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째형 및 10인승 이하 차량)	○ 각 기관	
	승용화물 검용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차량)	○ 각 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인 차량)	○ 각 기관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인 차량)	○ 각 기관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하인 차량)	○ 각 기관	
	경형승합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 각 기관	

차 종	차 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다)	배정대상	내구연한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	○ 각 기관	내용연수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 만인 차량)	○ 각 기관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	○ 각 기관	
	경형화물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 각 기관	
특수용	청소차	○ 각 기관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구급차	○ 각 기관	
	분뇨차	○ 각 기관	
	진료차	○ 각 기관	
	이동수리차	○ 각 기관	
	급수·살수차	○ 각 기관	
	트럭트렉터	○ 각 기관	
	트레일러	○ 각 기관	
	렉카차	○ 각 기관	
	기타특수차	○ 각 기관	

현 행	개 정 안
<p>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해당-----</p> <p>-----</p> <p>-----</p> <p>② 제1항에 따라 -----</p> <p>-----</p> <p>-----</p>
<p>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다목적승용·승용 화물 겸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p>	<p>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p> <p>-----</p> <p>-----</p> <p>-----</p> <p>-----</p>
<p>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p> <p>-----</p> <p>-----</p> <p>-----</p>
<p>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차 	<p>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p> <p>-----각 호의 어느 하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p>-----해당-----</p>

현 행	개 정 안
<p>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 ----- ----- --</p>
<p>3. ~ 4. (생 략)</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p>	<p>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p>
<p>제19조(차량의 등록)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 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u>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u>에 의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u>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당해</u>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u>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p>	<p>제19조(차량의 등록) ① ----- ----- ----- <u>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1항에 따른</u> ----- ----- ----- <u>해당</u> ----- ----- ----- ④ <u>제2항에 따라</u> ----- -----</p>

현 행	개 정 안
<p>관리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의한 등록 또는 등록 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 ----- -----</p>
<p>제21조(차량관리방법 및 공용표시)</p> <p>① (생략)</p> <p>② 집중관리부서는 <u>당해</u>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u>기타</u>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p> <p>③ 제20조제2항의 <u>규정에</u>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u>당해</u>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21조(차량관리방법 및 공용표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해당</u> ----- ----- ----- <u>그 밖의</u> ----- -----</p> <p>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 ----- <u>해당</u> -----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26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u>각호의</u>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u>제2호 내지 제6호의</u>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u>기타</u>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p>	<p>제26조(기록관리) ----- ----- <u>각 호의</u> ----- ----- ----- <u>제2호부터 제6호까지</u>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p>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차고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 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제27조(차고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1명 ----- ----- ③ 제2항에 따라 ----- ----- ----- ----- -----</p>
<p>제28조(지도·점검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p>	<p>제28조(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p>
<p>제31조(운전 주의의무 및 책임) ① ~ ② (생략)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p>	<p>제31조(운전 주의의무 및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도로교통법」 ----- ----- -----</p>
<p>제32조(사고 보고) (생략) 1. ~ 4. (생략) 5.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사항</p>	<p>제32조(사고 보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그 밖에 ---- -----</p>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당해</u>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p>	<p>제35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 ----- ----- <u>해당</u> ----- ----- ----- -----</p>
<p>제36조(차량의 운행) ① 제35조의 <u>규정에 의한</u>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6조(차량의 운행) ① 제35조에 따라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7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는 <u>제29조 내지 제32조</u>의 규정을 준수한다.</p>	<p>제37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 <u>제29조</u> <u>부터 제32조까지</u>-----</p>

현행				개정안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차종	차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다)		내구연한	차종	차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다)		내구연한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이 2,000cc이상인 차량.)	○ 시장 ○ 의장 ○ 부시장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이 2,000cc이상인 차량. 이하 같다)	○ 시장 ○ 의장 ○ 부시장	내용연수 7 년과 총주행 거리 12만킬 로미터 이상
승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배기량이 1,500cc이상 2,000cc 미만인 차량. 이하 같다)	○ 시 분청 ○ 시 분청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승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배기량이 1,500cc이상 2,000cc 미만인 차량. 이하 같다)	○ 시 분청 ○ 시 분청	내용연수 7 년과 총주행 거리 12만킬 로미터 이상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시 분청 ○ 시 의회 ○ 기관장이 4 급 이상인 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시 분청 ○ 시 의회 ○ 기관장이 4 급 이상인 기관	내용연수 7 년과 총주행 거리 12만킬 로미터 이상
	소형승용차 (배기량이 1,500cc미만인 차량)	○ 각 기			소형승용차 (배기량이 1,500cc미만인 차량)	○ 각 기	
	경형승용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인 차량)	○ 각 기관			경형승용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인 차량)	○ 각 기관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썬형 및 10인승 이하 차량)	○ 각 기관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썬형 및 10인승 이하 차량)	○ 각 기관	
	승용화물 겸용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차량)	○ 각 기관			승용화물 겸용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차량)	○ 각 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인 차량)	○ 각 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인 차량)	○ 각 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 하인 차량)	○ 각 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 하인 차량)	○ 각 기관	내용연수 7 년과 총주행 거리 12만킬 로미터 이상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 하인 차량)	○ 각 기관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 하인 차량)	○ 각 기관	
	경형승합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 각 기관			경형승합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 각 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	○ 각 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 만인 차량)	○ 각 기관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 만인 차량)			○ 각 기관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	○ 각 기관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			○ 각 기관	
	경형화물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 각 기관	경형화물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 각 기관	
특수용	청소차	○ 각 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	청소차	○ 각 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구급차	○ 각 기관			구급차	○ 각 기관	
	분뇨차	○ 각 기관			분뇨차	○ 각 기관	
	진료차	○ 각 기관			진료차	○ 각 기관	
	이동수리차	○ 각 기관			이동수리차	○ 각 기관	
	급수살수차	○ 각 기관			급수살수차	○ 각 기관	
	트럭트랙터	○ 각 기관			트럭트랙터	○ 각 기관	
	트레일러	○ 각 기관			트레일러	○ 각 기관	
	렉카차	○ 각 기관			렉카차	○ 각 기관	
기타특수차	○ 각 기관	기타특수차	○ 각 기관				

1. 개정이유

관용차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관별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차량의 교체가능 조건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 모두 충족토록 하는 물품수급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량의 내구연한 조정(안 별표 1)
 - 승용차(전용, 의전용) : 5년 ⇒ 7년,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
 - 승용차(업무용) : 6년 ⇒ 7년,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
 - 승합용(중형, 소형, 경형) 6년 ⇒ 7년,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
 - 화물용 6년 ⇒ 7년,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포항시 규칙 제562호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20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을 인정받은 자
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90점 이상)으로 선정된 자
3. 전통식품개발사업, 특산단지조성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자로 지정된 자
4.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계통 출하분 중 조합명의로 판매하는 농특산물

제3조(자격심의) 제2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포항시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사용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분기 말일까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품질인증서,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등 포함)
2.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3호 서식
3. 농특산물상표사용 신청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 서식
4.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5.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5조(상표사용 지정) ① 시장은 상표사용 지정 시 관내 생산 농특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상표사용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지정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로 허가받은 자는 포항시의 편람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을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상표사용의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쇄시 준수사항) ①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 지정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사용 중지)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가공품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6. 그 밖에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10조(사후관리) ① 상표사용자는 반기마다 농특산물 출하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품목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지정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수(참여농가수)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생 산 판 매 계 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출하기간 ~
	소재지	재배면적(ha)	
	공장(포장)소재지 및 규모	생산계획량(톤)	
	제품특성	농가수(호)	

상 표 사 용 디 자 인 계 획	품목	신청 농가수	출하량(톤)	포장단위	포장사용 매 수	사용기간	주 출하처

신청내용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 농협, 수협, 축산농협, 산림조합, 능금농협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별지 제1-2호서식】 3. 포항시농특산물상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 6.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가공품만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 사업계획서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수(참여농가수)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품관 방 질 리 방 법	규격결정	[]공동 []개별 []기타()
	품질결정	[]공동 []개별 []기타()
	선별작업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포장작업	[]포장센터 활용 []공동 []개별 []기타()
	수송방법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저장방법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기타()

관 리 책 임 자	구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취급품목	출하량

생 출 여 산 하 여 건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 여건
	특기사항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작성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능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4.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 사항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1. 성 명(작목반명 등) : (전화번호 :
- 2. 생 년 월 일 :
- 3. 주 소 :
- 4.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작목명) :

상기 본인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으며,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상표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작목반) :

성 명 : (인)

포 항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연장) 지정서

1. 지정번호 :
2. 단 체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5. 지정품목 :
6. 지정물량(사용매수) :
7.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연장) 사용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지 내 역	지정번호	
	품목명	
	지정기간	

사 유	기간	
	사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표사용 중지 신고서

1. 지정번호 :
2. 생산자 : (전화번호 :)
3. 주소 :
4. 품목(품종)명 :
5. 지정내용 :
6. 중지기간 :
7. 사유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와 같이 상표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명 :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제정이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표사용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나. 상표사용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다. 상표사용의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라. 상표사용 중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 - 513호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3. 20.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유가·인건비 상승 및 원재료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 경제안정을 위하여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한 실질 인센티브 제공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지역진출 확대에 따른 골목 영세상권의 경영악화를 일부 해소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항)

- 나.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안 제4조제3항)
- 다.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4.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경제노동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2413, FAX 270-2420, E-mail : yoonsky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2항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특례보증) ① <u>시장</u>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 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조(지원대상) ① (생략)</p> <p>1. ~ 2. (생략)</p> <p>〈<u>신설</u>〉</p> <p>② <u>기타</u>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조(특례보증) ① <u>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u>-----</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그 밖에</u> -----</p> <p>-----</p> <p>-----</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 - 20호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 3. 13.

포 항 시 장 박 승 호

1. 지정목적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내용

- 지정대상 : 한라종합시장
- 위 치 : 포항시 북구 용흥동 357-1번지 외 1필지
- 범 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범위 이내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내용

번호	지정대상	시장면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비고
1	한라종합시장	1,670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인정시장

3. 관련도서 열람방법 : 방문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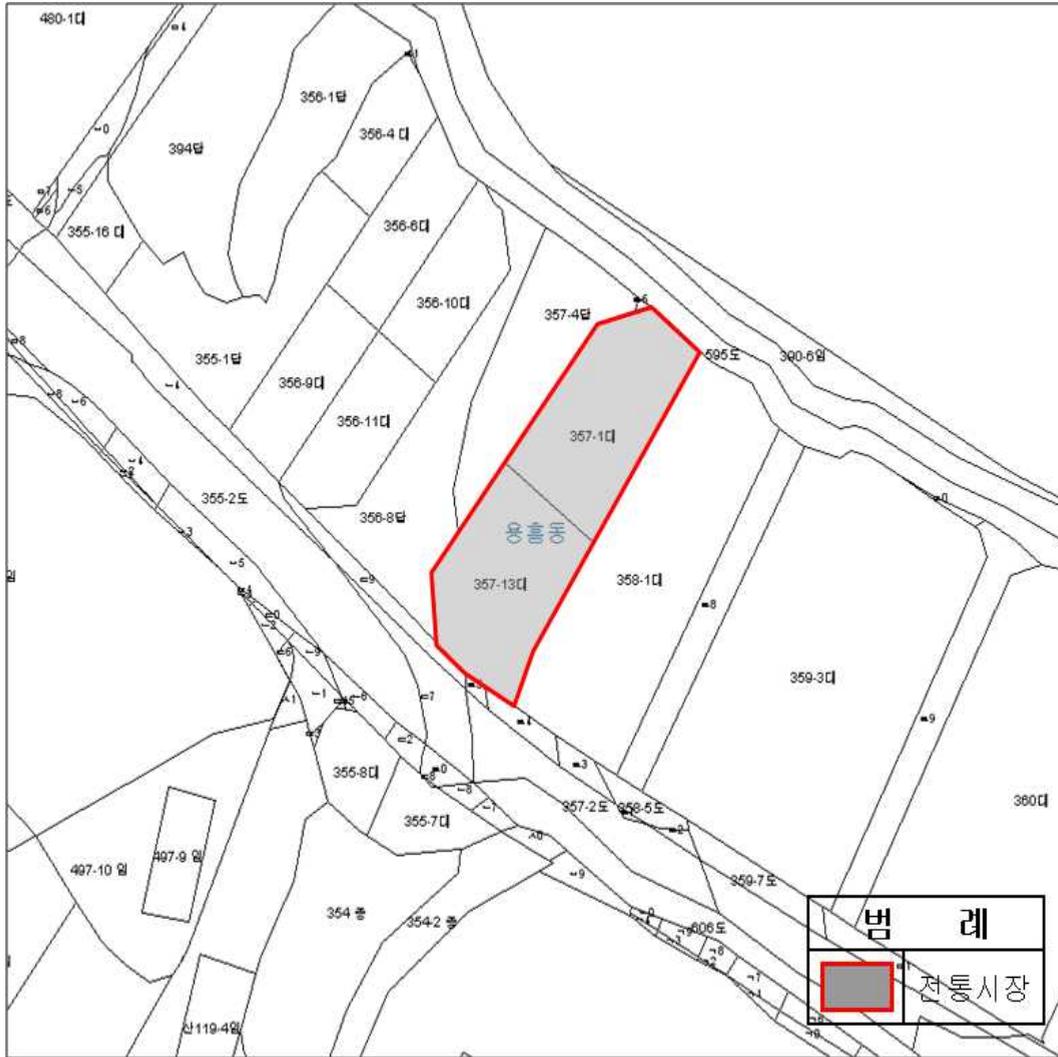
-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시청 경제노동과(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9층 ☎ 054-270-243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4.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다.

붙임 :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 지적도면 1부. 끝.

[붙임 1] 한라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적도



공 고

포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2호

포항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공고

포항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3월 19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감사 담당관	일반직 (5급) 또는 계약직 (개방형 5호)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종합계획,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공무원 비위 예방 및 조사·처리 ○ 주요 정책집행, 예산관리, 계약 등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 ○ 시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사항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에 대한 수감 및 처분요청사항 처리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등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심사(적격성심사)

3. 시험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되는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위 ②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특별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포항시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해당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해당사유》

-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다. 거주지·성별·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전문지식은 물론 인격(대인관계) 등에서 두루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

5. 시험일정 및 장소 (포항시 홈페이지 <http://www.ipohang.org/> 공고)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3.29(목)~4.2(월) (3일간)	서류전형	4. 3(화)	-	4. 6(금)
	면접시험	4.11(수)	대회의실	4.17(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하며 일정은 바뀔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12. 3. 29(목) ~ 4. 2(월) 09:00~18:00

나. 접수장소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등 불가

7. 제출서류(서식 별첨)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10,000원(포항시수입증지 부착)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7장 이내)

마. 최종 학력 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부 학위증명서 포함 제출

바. 경력증명서 1통(원본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1부
-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근무조건

- 가. 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나.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 계약직5호의 연봉한계액(36,534천원~64,278천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봉 외 수당 지급)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

9.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8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사.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054-270-20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

응 시 원 서(원본)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포항시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 3월 일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수입증지 10,000원 첨부란)	주소	(통 반) 전화 :					
	학력 (최종)	대 학 교 이 하	년	월	학 교(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 교(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응 시 원 서(부분)) 시험					사 진 (1)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 야 함.	
				(한자)			
	주민등록번호						~

(응 시 표) 시험		성명	(한글)				사 진 (2)
※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	
		2012년 월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포항시 인사조직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요령>>

- ① 시험명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명칭을 기재한다.
-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 ③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성 명 (3군데) : 정자로 기재한다.
- ⑤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한다.
- ⑥ 수입증지 : 포항시 수입증지(10,000원 상당)를 농협중앙회 포항시청출장소에서 구입하여 수입증지란에 부착한다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 개인신상

사 진 (3.5Cm × 4.5Cm)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병 역	군필여부		기타 사항		
	최종계급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 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 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 재하여 주십시오

□ 학력(대학 이후)

구 분	내 용				
	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학력 및 전공					
논문, 저술, 償 등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류
어학	종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정책(사업)목표, 감사조직 관리, 자체감사활동, 효율적 감사방안, 추진 전략 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7장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논문 및 연구(저술) 요약서 → 목록상의 순서대로 작성

구 분	
제 목	
○ 내 용 요 지(10줄 이내 간략히 설명)	

구 분	
제 목	
○ 내 용 요 지(10줄 이내 간략히 설명)	

구 분	
제 목	
○ 내 용 요 지(10줄 이내 간략히 설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2012년도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포항시가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2년 3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